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996. 11. 18.
도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6년 11월 2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1996년 11월 4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4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(1996. 11. 15 상정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건설국장 남승운)

- 가. 제안이유
 - 종전 “풍수해대책법”이 “자연재해대책법”으로 개정됨에 따라 영등포구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변경된 사항을 개정함.
- 나. 주요골자
 - ① 목적(개정안 제1조) : 종전 “풍수해대책법”이 “자연재해대책법”으로 개정됨.
 - ② 임무(개정안 제2조) : 수방단 임무는 방재시설, 재해위험시설, 재해위험지구의 점검, 정비 및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유도, 방재의날 행사참여 등
 - ③ 조직(개정안 제3조) : 수방단 조직은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으로 구성
 - ④ 편성(개정안 제5조) : 수방단은 50명내외로 구성하되 본부 및 경계반 10명내외, 복구반 30명내외, 구호반 10명 내외로 구성
 - ⑤ 종전 “수방단 설치”에 관한 조항은 동법시행령 제12조에 명시됨으로써 개정조례(안)에서는 삭제됨.
 - ⑥ 종전 “수방단원 교육 및 훈련”과 “수방단원 동원절차”에 관한 조항은 동법시행령 제14조에 명시됨으로써 개정조례(안)에서는 삭제됨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유 재한)

본 조례안은 전문개정안으로써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에 위임된 변경내용을 자치구 조례로 정비되는 내용으로 수방단 조직운영의 표준안에 의거하여 현행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 자치구 현실에 맞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임.

4. 심의결과 : 원안의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85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6. 11. 2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개정사유

- 종전 “풍수해대책법”이 “자연재해대책법”으로 개정됨에 따라 영등포구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변경된 사항을 개정함.

2. 주요골자

- ① 목적(개정안 제1조) : 종전 “풍수해대책법”이 “자연재해대책법”으로 개정됨.
- ② 임무(개정안 제2조) : 수방단 임무는 방재시설, 재해위험시설, 재해위험지구의 점검, 정비 및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 대피유도, 방재의날 행사참여 등
- ③ 조직(개정안 제3조) : 수방단 조직은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으로 구성
- ④ 편성(개정안 제5조) : 수방단은 50명내외로 구성하되 본부 및 경계반 10명내외, 복구반 30명내외, 구호반 10명 내외로 구성
- ⑤ 종전 “수방단 설치”에 관한 조항은 동법시행령 제12조에 명시됨으로써 개정조례(안)에서는 삭제됨.
- ⑥ 종전 “수방단원 교육 및 훈련”과 “수방단원 동원절차”에 관한 조항은 동법시행령 제14조에 명시됨으로써 개정조례(안)에서는 삭제됨.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

-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(법률 제4,993호 1995. 12. 6)
-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2조(대통령령 제15033호, 1996. 6. 21)
- 조례제정 및 개정표준(안) 통보 : 치수 13930-887('96. 7. 22)

나. 예산조치 : 없음

다. 합의사항 : 없음

라. 조 례 안 : 별첨

첨부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방단운영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방단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방단운영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방단(이하 “수방단”이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임무) 수방단은 다음 각호와 임무를 수행한다.

1. 법 제22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재해사전대비 점검·정비
2.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비 유도
3. 법 제36조제1항의 재해응급대책
4. 법 제23조제3항과 영 제25조에 의한 방재의 날 행사참여
5.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

제3조(조직) ① 수방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
2.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 직원
3. 기타 구청장이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② 제1항제1호의 주민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.

1. 17세 미만자 및 60세 이상인 자
2. 고교생 및 대학생
3. 경찰관 및 군인
4.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

제4조(단장) ① 단장은 단원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.

② 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수방단업무를 총괄하여 수방단을 대표한다.

제5조(편성)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각반 별 인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본부 및 경계반 : 10명내외
 - 가. 주민대피 유도
 - 나. 재해 유관기관간의 연락유지
 - 다. 주민의 질서유지 및 통제
 - 라.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계
 - 마. 기타 다른 반에 속하지 않는 업무

- 2. 복구반 : 30명내외
 - 가.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·정비
 - 나. 피해시설물의 긴급 복구
 - 다. 각종장비 및 자재의 동원
 - 라. 재해지구의 정리 정돈

- 3. 구호반 : 10명내외
 - 가. 이재민에 대한 급식조달 및 사후관리
 - 나. 사망자, 부상자 등 인명피해자 조치
 - 다. 재해발생지역의 방역조치
 - 라. 담요 등 구호물자 조달

제6조(소집해제 및 기록보존) ① 구청장은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의한 소집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3년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.

제7조(기타 필요한 사항)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제2호서식】

수방단원소집통지서

() 담당

연 번 : 호 시행일자 :
수 신 : 발 신 : 인

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소집통보하오니 응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1. 목 적 : 동원 교육 훈련 기타
- 2. 기 간 : . . . 시부터 . . . 시까지(일 시간)
- 3. 장 소 :
- 4. 참고사항 :

----- 절 ----- 취 ----- 선 -----

수방단원소집통지서수령증

연 번 : 호
성 명 :
주 소 : (전화번호 :)
전달장소 :

위 사람에게 대한 수방단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합니다.

년 월 일

수령인 서명 또는 인(관계 : 본인의)